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02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이헌승·송언석·문정복

진성준 • 정동만 • 하영제

백혜련 • 김영진 • 박 진

金炳旭・김도읍・이종배

이주환 · 이양수 · 김정호

의원(15인)

제안이유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적기 SOC 공급, 재정절감 등을 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은 2021년 5월 현재 17 2.9km(총 6개 노선)가 운영 중이며, 7개사업의 건설·설계 등이 진행중으로 2027년에는 총 476.5km로 증가하여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노선 연장이 현재 대비 175.6%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으로서 타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설 및 운영이 필요하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다른 민자 SOC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에서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철도분야 민간투자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원토록 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 함.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제7조제7호의2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 업무의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호까지"를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로 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독업무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제7조(사업)
사업을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하는 철도사업의 관리 및 감
	독업무의 지원
8. 제1호부터 <u>제7호까지</u> 의 사업	8 <u>제7호까지 및 제7</u>
에 딸린 사업	호의2
9. (생략)	9. (현행과 같음)